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신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조합원) ①·② (생략)	제37조(조합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신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락처	(044) 201 - 3384